

# 조교임용규정

2002.12.01. 제정  
2008.03.01. 개정

**제1조(목적)** 이 규정은 국제영어대학원대학교(이하 ‘본교’ 라 한다)의 조교임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조교의 구분)** 조교는 그 직무에 따라 연구조교와 학과조교로 구분한다.

**제3조(직무)** ①연구조교는 지도교수 또는 소속장의 지도를 받아 교육과 연구에 관한 사무를 보좌한다.

②학과조교는 소속장의 지도를 받아 교육과 학사행정에 관한 사무를 보좌한다.

**제4조(조교별 배정기관 범위 및 정원)** ①연구조교를 둘 수 있는 기관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.

1. 전임교원
2. 부속기관

②학과조교를 둘 수 있는 기관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.

1. 학과
2. 부속기관
3. 기타 특정목적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관

③각 기관의 조교 정원은 매 학년도 마다 따로 정한다.

**제5조(임용자격)** 조교는 대학졸업이상의 학력을 소지한 자로서, 품행이 방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라야 한다. 다만, 연구조교와 학과조교는 서로 겸임할 수 없다.

**제6조(임용절차)** ①연구조교는 학과장 또는 부속기관장의 추천을 받아 총장이 임용한다.

②학과조교는 소속장의 추천을 받아 총장이 임용한다.

③조교의 임용추천은 임용희망일 1개월전까지 이루어져야 한다.

**제7조(임용기간)** ①조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,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.

②(삭제)

③학과조교의 임용시기는 원칙적으로 매학년도 3월 1일 또는 9월 1일로 한다.

다만, 학기중에 임용된 조교의 임기는 임기종료일이 속한 학기의 말일까지로 한다.

**제8조(복무)** ①조교는 소속장 또는 담당교원이 정한 근무조건에 따라 소정의 근무시간 동안 성실히 집무하여야 한다.

②조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총장의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.

1. 본교의 명예를 훼손시키거나 학칙 및 체규정을 위배한 때
2. 조교로서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
3. 신병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조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

③총장은 조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해당 조교는 이를 이수하여야 한다.

**제9조(처우)** ①조교에게는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정의 보수를 지급한다.

②연구조교에게는 담당교원 또는 연구기관의 연구비 및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정액의 연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
③본교에 재학중인 연구조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소정의 연구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.

**제10조(세부사항)**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.

## 부 칙

①(시행일) 이 규정은 200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②(경과조치) 이 규정이 시행되기 이전에 임용된 조교는 본 규정에 의하여 임용된 것으로 본다.

## 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08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.